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성폭력범죄 피해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 등 가중 처벌〉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14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혜 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2
2. 성폭력범죄에 대한 규율과 그 범위 확대 논의	4
3. 성폭력범죄 피해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 등 가중처벌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7.
3. 회 부 일 : 2025. 1.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2차 가해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성폭력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를 넘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성폭력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2 신설).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성폭력범죄 피해사실에 관한 명예훼손·모욕의 죄를 신설하여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모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동시에(안 제13조의2 신설), 해당 죄를 성폭력범죄의 유형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u>제15조(미수범)</u> 까지의 죄	5. ----- ----- <u>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13조의2(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성폭력범죄의 피해사</u>

현행	개정안
	<u>실에 관하여 「형법」 제307조, 제309조, 제311조의 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2. 성폭력범죄에 대한 규율과 그 범위 확대 논의

가.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절차상의 특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성폭력범죄의 정의 및 절차상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성폭력처벌법의 구조 >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 (\$1~\$2)	총 칙	성폭력처벌법의 목적, 성폭력범죄의 정의
제2장 (\$3~\$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개별적인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판 절차상의 특례 등
제3장 (\$42~\$49-2)	신상정보 등록 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 등록정보의 제출·변경, 등록정보의 관리 등
제4장 (\$50~\$52)	벌 칙	신상정보등록의무 위반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그 개념요소를 제시하기보다는 대상이 되는 범죄를 나열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성폭력범죄’를 정의하고 있는데,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열거된 기본적 구성요건을 바탕으로 하여 성폭력범죄가 정의되며, 그 기본적 범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포함됨.¹⁾

1) 성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음행매개 등 성풍속에 관한 죄, 추행·간음·성매매 등 목적의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등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함.

<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유형 >

구 분	근거 법률	대상 범죄
제1항제1호	형법	음행매개, 음화반포등, 음화제조등, 공연음란
제1항제2호	형법	추행·간음·성매매 등 목적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제1항제3호	형법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및 강제추행
제1항제4호	형법	강도강간
제1항제5호	성폭력처벌법	특수강도강간등,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등 이용 촬영, 허위영상물 반포등,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등
제2항	기타 법률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제1항 각 호의 범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행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수사와 공판 등에 있어 여러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제16조), 고소 제한의 예외(제18조), 「형법」상 심신장애감경 등 미적용(제20조), 공소시효의 특례(제21조)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제22조의2 등) 등이,²⁾

2) 성폭력처벌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 ⑨ (생략)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전담조사제(제26조),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에서의 특례(제27조), 전담재판부(제28조),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제29조), 심리의 비공개(제31조) 및 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제32조) 등이 인정됨.³⁾

-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생략)

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소지, 제공, 판매 또는 광고. 다만, 제공이나 판매는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가 성년이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나.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③ (생략)

3) 성폭력처벌법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나. 성폭력범죄의 범위 확대 관련 논의

□ 성폭력처벌법은 1994. 1. 15. 제정되어 1994. 4. 1.부터 시행되었던 舊「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중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제정한 법률로서,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처음 시행된 이래 성폭력범죄의 범위가 확대되어 왔음.

○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확대한 주요 개정으로는,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전부개정법률(2013. 6. 19. 시행)에 따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신설,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 일부개정법률(2018. 12. 18. 시행)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의 대상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 추가, 2020. 3. 24. 법률 제17086호 일부개정법률(2020. 6. 25. 시행)에 따른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신설 등이 있었음.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8조(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32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 ④ (생략)

□ 현실에서 성적 법익에 대한 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여러 법익 침해행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성폭력범죄의 피해 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행위를 피해자의 성적 법익에 대한 추가적 피해로 보아 성폭력범죄에 포함하려는 취지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음.

< 성범죄 피해 사실 적시 등 관련 주요 법률안(제20·21대국회) >

의안번호 (대표발의)	회부일	주요내용	비고
2012522 (손금주)	18.03.20.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등을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확인하는 행위, 타인에게 피해자 관련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등 처벌	임기만료 폐기
2020527 (이종배)	19.05.22.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한 명예훼손·모욕 시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 가중	임기만료 폐기
2101842 (이종배)	20.07.14.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한 명예훼손·모욕 시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 가중	임기만료 폐기
2101890 (서정숙)	22.07.15.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 시 가중 처벌	임기만료 폐기

○ 기타 성폭력범죄에 추가하기 위하여 법률안이 발의된 주요 행위 유형으로는 성희롱,⁴⁾ 스텔싱(Stealthing),⁵⁾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음란물유포 등이 있음.⁶⁾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제2115954호).

5) 성관계 중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피임기구 등의 제거행위를 뜻하는 표현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제2112594호).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제2020205호).

3. 성폭력범죄 피해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 등 가중처벌

가. 검토의견

-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어느 정도의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범죄의 죄질, 보호법익과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⁷⁾
-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 사실 관련 명예훼손·모욕을 신설하고, 이를 성폭력범죄에 추가할 것인지는 그 내용이 개정의 취지와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3조의2는 성폭력범죄 피해 사실 관련 명예훼손·모욕을 도입하면서,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인용하되 그에 수정을 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안 제13조의2에 따른 성폭력범죄 피해 사실 관련 명예훼손·모욕에 인용된 다른 각 법률조문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7) 헌법재판소 2013. 10. 24. 2012헌바85 등.

인용조문 ¹	구성요건			법정형 ²		
	목 적	수 단	기 타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 금
형 §307①	-	-	공연히 사실 적시	2년 ↓	-	500만원 ↓
형 §307②	-	-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	5년 ↓	10년 ↓	1,000만원 ↓
형 §309①	비방목적	출판물 등	공연히 사실 적시	3년 ↓	-	700만원 ↓
형 §309②	비방목적	출판물 등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	7년 ↓	10년 ↓	1,500만원 ↓
정보 §70①	비방목적	정보통신망	공연히 사실 적시	3년 ↓	-	3,000만원 ↓
정보 §70②	비방목적	정보통신망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	7년 ↓	10년 ↓	5,000만원 ↓
형 §311	-	-	공연히 모욕(경멸적 표현)	1년 ↓	-	200만원 ↓

주. 1. 형은 「형법」,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2. 각 조문의 형종별 상한으로, 선택의 대상

- 개정안에 의할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 사실에 관하여 각 인용조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정형은, 1년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모욕)부터, 10년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이용 허위사실 명예훼손)까지에 해당하게 될 것임.

내 용	유 형 ¹	법정형 ²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 금
성폭력범죄 피해 사실	형 §307①	3년 ↓	-	750만원 ↓
	형 §307②	7년 6월 ↓	15년 ↓	1,500만원 ↓
	형 §309①	4년 6월 ↓	-	1,050만원 ↓
	형 §309②	10년 6월 ↓	15년 ↓	2,250만원 ↓
	정보 §70①	4년 6월 ↓	-	4,500만원 ↓
	정보 §70②	10년 6월 ↓	15년 ↓	7,500만원 ↓
	형 §311	1년 6월 ↓	-	300만원 ↓

주. 1. 형은 「형법」,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2. 각 조문의 형종별 상한으로, 선택의 대상

□ 결국 안 제13조의2는 ‘성폭력범죄 피해 사실’이라는 행위의 내용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삼아 법정형을 가중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인데, ‘성폭력범죄 피해 사실’을 내용으로 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다른 유형의 명예훼손·모욕의 법정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저해하지는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25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할 때, 19개 법률에서 가중적 구성요건을 두어 원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5년 9월 현재

연번	법률명	조 문	원범죄	가중사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1-2①	역학조사거부 등	(범행방법) 단체·다중
		§81-2②	입원치료거부 등	(범행결과) 감염병 전파
2	경비업법	§29	특수상해, 특수폭행, 체포, 감금, 협박, 강요 등	(범행주체) 경비원 (범행방법) 무기 등 휴대
3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45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강요 등	(범행주체) 경비원 (범행방법) 무기 등 휴대
4	군사기밀 보호법	§13-2	군사기밀 탐지·점유·누설 등	(추가행위) 금품수수요구 등
		§15	군사기밀 탐지·점유·누설 등	(범행목적) 외국·외국인
5	노인복지법	§59-2	노인 대상 상해·폭행·성폭행·성희롱 등	(범행주체) 상습범 또는 노인복지시설종사자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0②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소지·사용·제조 등	(범행주체) 상습범
7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2①	매장유산 도굴, 양도·양수·보유 등	(범행방법) 단체·다중 또는 위험한 물건 소지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93①	지정문화유산 무허가수출·손상·절취·은닉 등	(범행방법) 단체·다중 또는 위험한 물건 소지
9	밀항단속법	§5	밀항·이선 및 그 알선 등	(범행주체) 상습범
10	병역법	§97	병역 통지서 수령 거부, 병역기피 목적 도망 등	(범행상황) 전시·사변·동원령 선포 시

연번	법률명	조 문	원범죄	가중사유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③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및 그 유인·권유 등	(범행대상)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
		§1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행주체) 보호·감독자 등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	아동학대범죄	(범행주체) 상습범
		§7	아동학대범죄	(범행주체) 보호자
13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52②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따른 어선원 사망	(범행주체) 재범(再犯)
14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31①	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후 부정처사, 뇌물공여 등	(범행주체)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등
15	장애인복지법	§88-2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범행주체) 상습범 또는 보호·감독자 등
16	철도안전법	§80②	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 등	(범행결과) 열차운행 지장
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②	폭행, 협박, 주거침입, 손괴, 체포, 감금, 강요, 상해 등	(범행방법) 2명 이상 공동
18	형법	§1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외의 범죄	(범행주체) 공무원 (범행방법) 직권 이용
1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4①	오염물질 불법배출, 오염물질 불법배출 치사상 등	(범행대상) 환경보호지역 등

- 원범죄의 법정형에 대하여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범행주체의 속성이나 법적 지위, 범행대상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또는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행위의 불법성이 더욱 증가한다고 평가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음.

□ 한편, 안 제13조의2는 「형법」 제311조를 인용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 사실에 관한 모욕을 범죄구성요건에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폭력범죄 피해 사실에 관한 모욕’이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본래 범죄행위로서의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⁸⁾ ‘성폭력범죄 피해 사실’에 관한 표현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내용을 표현하는 경우는 이미 모욕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됨.
- 만약 이와 달리 성폭력범죄 피해 사실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폭력범죄 피해 사실’에 관한 모욕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단순한 ‘모욕’과 ‘성폭력범죄 피해 사실 모욕’ 간 경계를 분명하게 하기 어려워 가중처벌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할 소지는 없는지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나아가 안 제13조의2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 사실 관련 명예훼손·모욕을 신설하더라도 수감명령 등의 병과(제16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제18조), 「형법」상 심신장애감면 등의 배제(제20조), 공소 시효의 특례(제21조),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제23조),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제30조의2), 증거보전의 특례(제41조) 등의 적용 여부는 다른 유형의 명예훼손·모욕 등과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나.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명예훼손 및 모욕 중 성폭력범죄의 피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하는 것은 다른 유형의 명예훼손 및 모욕의 죄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점, 원범죄에서 정한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면 책임주의 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는 점,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전체 법체계의 측면에서 타당한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1
